##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

발의연월일: 2024. 6. 4.

발 의 자: 박수영·조경태·백종헌

김도읍 • 이서권 • 서지영

김미애 · 김대식 · 조승환

이헌승 · 주진우 · 곽규택

김희정 · 정성국 · 박성훈

정동만 · 정연욱 의원

(17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음.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였으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로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상황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동남권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축으로 삼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등 행정절차를 이미 마무리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법률 제 호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부산광역시"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점 이전에 관한 준비행위 등)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u>서</u>	① <u>부산</u>		
<u>울특별시</u> 에 둔다.	<u>광역시</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